

21세기 일·한 경제관계연구회 보고서

21세기 일·한 경제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총론)

2000. 5

日本貿易振興會 아시아經濟研究所

머리말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0월 10일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日韓關係를 구축할 것을 제창하였다. 새로운 관계 구축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1) 투자촉진 2) 무역촉진 3)문화교류 촉진이다. 이에 따라 1998년 11월 양국의 정부당국은 日韓間 經濟關係 強化에 대한 方策을 폭 넓게 검토할 연구회를 民間有識者를 중심으로 설립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양국에 각각 幹事機關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일본무역진흥회 아시아경제연구소(IDE)가, 한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지명되었다.

일본무역진흥회 아시아경제연구소에 설치된 「21世紀 日韓 經濟關係 研究會」는, 학계, 연구소(Think Tank) 등의 有識者를 委員으로 하고, 정부측의 통상산업성, 외무성, 농림수산업성 관계자도 참가하여 모두 13회(2차례의 韓日 공동연구회 포함)에 걸쳐 연구회를 실시하였다.

연구회에서는 (1) 日韓間 상품·서비스무역 및 투자 현황과 문제·방해요인, 장벽 등을 조사하고, 장벽 철폐에 대한 효과 분석, (2) 日韓 자유무역협정(FTA)의 構圖 검토, (3) 관세 철폐에 대한 정태적·동태적 효과, (4) 그 외 정부간 협정·협력 構圖 분석, (5) 민간차원에서의 산업·기술협력, (6) 통화·금융협력 등에 대해 委員報告 및 討議를 추진해 왔다.

연구회는 FTA가 日韓 양국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그 실현을 위해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도록 양국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울러 일본에 있어 새로운 주제인 FTA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위원을 비롯해 관계자로부터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그 모든 것을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2000년 3월

21世紀 日韓 經濟關係研究會

主査 山澤 逸平

21世紀 日韓 經濟關係研究會 會員名簿

主査	山澤 逸平	일본무역진흥회 아시아경제연구소 소장 早稻田大學大學院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幹事	加賀美充洋	일본무역진흥회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기획부장
委員	大賀 圭治	東京大學大學院 농학생명과학연구과 교수
委員	河合 正男	일본무역진흥회 이사
(注 : 1999년 3월 3일 望月 敏夫 前일본무역진흥회 이사로부터 引繼)		
委員	近藤 健彦	立命館大學 국제관계학부 교수
委員	深川由起子	靑山學院大學 경제학부 조교수
委員	松本 厚治	産業研究所 국제경제연구센터 소장
委員	森信 茂樹	大阪大學 법학부 교수
委員	渡邊 賴純	大妻女子大學 비교문화학부 교수
(注 : 위원은 50音順)		

政府關係者	岩崎 博	통상산업성 통상정책국북서아시아 과장(當時)
	橋高 公久	통상산업성 통상정책국통상정책기획실장(當時)
	梅本 和義	외무성 아시아국북동아시아 과장
	柳 秀直	외무성 아시아국북동아시아과 기획관
	御厨 邦雄	대장성 관세국국제조사 과장
	高? 徹	농림수산성 경제국국제부무역관세 과장

事務局 일본무역진흥회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기획부

連絡處 :

일본무역진흥회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기획부 加賀美 充洋

우편번호 261-8545 千葉市 美區 若葉 3-2-2

Tel : 043-299-9503

Fax : 043-299-9729

『21世紀 日韓 經濟關係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總論

山澤 逸平

目次

1. 21세기 日韓 경제관계연구회 경위	5
2. WTO와의 整合的인 日韓 자유무역협정 조건	6
3. 日韓 무역투자 현황과 장벽	7
4. 日韓 FTA 효과	17
5. 日韓 경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	23
6. 日韓 FTA효과의 定量的 평가	25
7. 日韓 FTA 형성을 위한 노력	30
8. 아시아태평양, 세계 속의 日韓關係	32

첨부자료 「日韓 經濟 Agenda 21」

各論(別冊)

1. 21세기 日韓 경제관계연구회 경위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日韓貿易은 비약적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양국이 빈약한 자원을 가지고 공업제품으로 경쟁하는 구조임과 동시에, 이웃나라로서 보완관계가 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와 인적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한편으로는 日韓間 마찰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한국의 만성적인 對日무역적자가 문제시되면서 일본측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받게 되었다. 한국은 다른국가들과 차별하는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실시하여 일본의 특정제품 수입을 억제하기에 이르렀다.

1992년에는 양국 정상회담(미야자와·노태우)에서 무역수지 불균형 是正을 위해 한국제품의 對日수출 촉진·투자협력 프로그램이 합의되었으며, 민간차원에서는 日韓·韓日 산업기술협력재단이 설립되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재육성·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산업기술협력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日韓 무역수지 불균형은 수출입 비율로는 개선되었지만, 절대 금액면으로는 계속 확대되었다. 이렇게 日韓 마찰이 심화되면서 日韓間의 무역·투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축소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對日 수출비중은 1988년 20%에서 1997년에는 11%로, 수입은 同 31%에서 19%로 각각 축소하는 등, 日韓關係는 예전보다 더 멀어지게 되었다.

1997년 여름, 아시아 통화위기가 한국에도 파급되어, 한국은 혹독한 긴축정책하에서 심각한 경제정체를 겪게되었으며, 일본은 1992년 이후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1998년 양국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양국은 경기의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한일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금세기에 일어난 문제는 금세기 안에 해결하고, 21세기 日韓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강조함으로써, 일본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 후 연말에 걸쳐 양국간 장관회의 및 日韓 각료간담회, 日韓 민관합동 투자촉진협의회 등이 잇따라 개최되면서 日韓 경제관계를 긴밀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 가운데 양국 통상장관회의에서는 日韓 쌍방이 日韓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日韓 경제관계 긴밀화를 위한 方策을 연구하자는 것도 제안되었다. 1999년 3월 한국을 방문한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는 「日韓 經濟 Agenda 21」를 통해

지금까지의 경제협력 틀을 초월한 日韓關係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투자촉진, 조세조약, 기준인증, 지적소유권, WTO 차기교섭 등 5개 분야에서의 협력이 포함됨으로써, 日韓 경제관계 긴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日韓 양국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일본도 한국도 지금까지 전세계 국가들과 교역관계를 맺고, 다자간 통상 시스템하에서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자유무역협정은 EU, NAFTA를 비롯해 다수의 국가들이 근접국가와의 경제통합을 전개하는 수단으로 채용하는 등, 다자간 통상 시스템하에서 자유화를 달성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日韓間에 잔존하는 관세·비관세조치를 철폐함으로써, 투자촉진·무역의 원활화 및 양국의 제도·法の 공통화를 포함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화(Globalization)가 전개되는 가운데 日韓 양국기업은 각각 과감한 구조개혁을 전개하고 있다. 기존의 기업그룹의 풀셋트型 생산방식을 지양하고, 채산성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외국기업과의 M&A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협정, 기준인증 등을 토대로 한 日韓 자유무역협정은, 日韓 양국기업의 적극적인 연대강화를 촉진시키는 다이나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계화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日韓 경제관계가 가일층의 긴밀화 이익을 거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밝히고, 日韓 양국의 民官이 이러한 방향으로 협력해 가는 21세기 日韓關係의 새로운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本 報告書의 목적은 바로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

2. WTO와의 整合的인 日韓 자유무역협정 조건

GATT는 체결국간의 무차별대우를 원칙(GATT 제1조)으로 하고, 모든 체결국에 적용되는 무역장벽 철폐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제24조에 FTA 등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 일시적으로는 무차별원칙에 반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자간 통상 시스템하에서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 제24조를 근간으로 일찍이 유럽공동시장이 형성되었고, 최근에 이르러 이것이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또한 北美 자유무역협정(NAFTA) 등 다수의 FTA가 체결되었다.

GATT에 의한 다자간 통상 시스템하에서의 자유화는 케네디라운드, 도쿄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교섭으로 이어져 왔으며, 1995년에 GATT는 WTO로 발전·개조되었으나, FTA형성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활발히 전

개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국·지역이 참가하고 있는 APEC은 아직 FTA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동남아시아국가 등 APEC 참가국의 과반수는 어떠한 형태로든 FTA에 속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FTA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日韓 양국간 FTA 제안은 너무 늦은 감마저 있다. 그러나 일본, 한국은 전세계의 주요 무역국이어서,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GATT/WTO의 FTA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GATT/WTO가 정하고 있는 FTA의 기본적인 조건은 5가지로 되어있다.

- (A) FTA를 형성하여도 다른 체결국가들과의 무역에 대한 障害를 철회해서는 안된다.
- (B) 중간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기간내에 FTA를 설정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24조 5항(C)) 타당한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있다.
- (C) FTA에 참가하는 체결국은 곧바로 그 취지를 체결국단에게 통고해야 한다. (24조 7항)
- (D) FTA에서는 관세 등 그 외의 제한적 통상규칙이 사실상 모든 무역에 대해 철폐되어야 한다. (24조 8항(b))
- (E) 서비스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FTA는 상품무역에 관한 (A), (B), (C)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GATT 제5조 1항, 4항, 5~7항)

日韓 양국은 지금까지 FTA를 다자간 통상 시스템하에서의 자유화와 整合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日韓 양국이 형성하는 FTA는 이러한 주장에 합치하고, 전술한 조건을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D)에 관해서는 각국마다 「사실상의 모든 무역」의 해석에 견해차가 있음을 인식하여, 일본으로서도 어떠한 FTA가 WTO규범에 벗어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日韓 무역투자 현황과 장벽

日韓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을 경우에 그 효과를 推定하는데는, 우선 日韓間의

상품·서비스무역 및 투자 현황을 원본통계에 근거하여 정확히 분석하여 그 특징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관세조치와 여러 비관세조치, 투자제한조치를 모두 제거하고, 이러한 제한조치가 앞서 언급한 日韓間 무역투자 현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吟味하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절차를 명확히 추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진정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3-1. 日韓 무역현황과 장벽

우선 日韓 상품무역의 포괄적인 통계를 검토해 보자. 日韓 양국의 총수출, 총수입에서 주요 상품별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日韓 무역현황을 조사해 본다. 모든 상품의 평균비율과 비교해 對日 또는 對韓 수출입 비율이 높은 상품종류는 對日 또는 對韓 무역으로의 特化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日韓貿易 패턴의 특징이 나타난다.

- (1) 日韓 양국은 공통적인 수출입 패턴을 가지고 있다. 수출은 전기기계, 일반기계, 운송기계, 화학품, 금속, 기타 제조품이며, 수입은 광물성연료·원료품과 운송기계 등 공업품이다.
- (2) 광물성연료, 농산물을 포함한 원료품은 양국 모두 오로지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日韓間 무역은 소규모이다.
- (3) 전기기계, 일반기계, 화학품, 금속, 기타 제조품은 日韓間에도 상호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산업내 분업이 성립하고 있으나, 모든 상품에서 일본측의 대폭적인 수출 초과로 나타났다.
- (4) 일반적으로 한국의 對日 수출입 특화가 일본의 對韓 수출입 특화보다 높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는 금속, 섬유·의류, 기타 제조품이며, 주요 수입품에는 일반기계·전기기계·기타 제조품으로 평균을 상회한다. 금액면으로는 소규모이지만 수산물, 식료, 광물연료, 비금속광물의 수출과 비금속광물의 수입에서 對日 특화가 현저히 높다. 일본도 화학, 금속의 수출과 전기기계, 금속, 섬유·의류의 수입에서 對韓 특화가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소규모품목에서는 비금속광물, 광물성연료, 식료품 등도 對韓 특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운송기계는 韓日 양국 모두 주요 수출품임에도 불구하고 日韓間의 수출입

은 극히 적다.

그런데 (3)에서 산업내 분업이 성립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각 상품에는 중간재·부품과 완성품도 포함하고 있으며, 완성품에도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나 고급품·저급품 등 양쪽을 포함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4)는 近隣貿易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또한 그것이 전술한 산업내 분업을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1), (2)의 특징은 양국의 자원부존 및 비교우위를 들면 비교적 쉽게 설명된다. 그러나 (3)~(5)는 日韓貿易의 특징으로서 그 原因究明이 필요하다. 과연 어느 정도 日韓 양국의 무역장벽으로 설명되는가. 예를 들면, (5)는 한국측의 무역장벽이었던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통한 자동차의 對日 수입제한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日本과 한국의 무역장벽을 조사해 보자. 일본은 극히 일부의 수산물에는 수입수량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관세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0~5%내의 낮은 관세이다. 모든 輸入先에 무차별하게 적용되는 MFN(최혜국대우)관세이므로 한국제품이 차별 받는 일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일반특혜관세(GSP)가 1973년부터 적용되어 한국제품에는 다른 개도국과 동일한 無關稅 또는 低關稅가 적용되어 왔다. 아울러 GSP는 한국 등 高소득국의 졸업 규범이 정해져 있어, 1998년부터 일부 일부품목에 대한 적용이 중지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모든 품목의 적용이 중지될 전망이다.

본래 한국측은 1992년 6월의 「日韓 무역불균형 是正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내용에 高관세 16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구하였다. 이 중에는 가죽製 의류(17.5%) 및 가죽製 운동화(27%), 여자용 블라우스·셔츠(11.6%와 13.9%), 스웨터·카디건(11.6%), 여행용 가방(8.8%), 高밀도 폴리프로필렌(從價 22% 상당) 등의 일본측 민감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세율은 1999년 실행세율). 1998년 한국측은 수산물과 모직물의 수입수량 제한 및 가공식품의 첨가물 기준과 화장품의 성분규제, 자동차의 인증제도 등을 「對日 수입상의 방해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일부 품목에 있어 이러한 잔존 수입제한과 高관세가 당해 품목의 對日 수출을 더욱 방해하고 있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들은 (4)의 한국의 對日 수출 특화품이므로 한국측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3)에서 지적한 기계류, 화학, 금속에서의 일본측의 수출효과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對세계 수출에서 나타난 일본측의 높은 경쟁력이 日韓貿易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도 한국이 경쟁력을 강화해 옴으로써 對세계 수출과 함께 對日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산업내 분업의 실태인 것이다.

본래 同質의 상품이 수출될 경우 동시에 수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한국측은 범용품, 기술적으로 표준화품, 저가격품이 수출되는데 반해, 일본측은 특수가공품, 한국에서 조달할 수 없는 부품·중간재, 고가격 브랜드제품이 수출되는 패턴으로 되어 있다.

한편 한국측의 관세조치는 일본측보다 높고, 제조업품 중 일부 화학품에는 17.6%, 유리밸브·튜브에는 15.4%의 高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또한 철강판, 축전지, 열전자관, 액정디바이스, 배전반, 인쇄회로, 사진기부품, 자동차부품, 등 일본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에는 대부분이 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1978년부터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실시하고, 1991년부터 원산지확인제도·원산지관리규제를 추가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본제품의 수입을 엄격히 억제해 왔다. 이는 주로 (3)의 산업내 분업이 활발한 품목에 관계되고 있다. 일본의 해제요구와 제3국으로부터의 비판을 받으면서 한국은 1990년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同 제도를 해제하여 1999년 6월말 완전히 해제하였다.

1998년말 해제된 품목의 일부분이 1999년 상반기 對日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에서는 對日 수입자유화 신증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는 시기적으로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어 다음 節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보기로 한다.

3-2.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효과

본 제도에 의한 對日 수입제한이 1998년말 32개품목, 1999년 6월말 16개품목이 해제되면서 완전 해제되었다. 그 직후 해제품목의 對日 수입이 급증한 것이 日韓 FTA의 자유화 효과를 나타내는 통계로 인용되면서 신증론을 고조시키는 논의로 사용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우리들 자신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수입선다변화제도를 WTO에 제소하는 것을 자중하고 양자간에서 제도철폐를 하기 위한 교섭을 전개해 왔다. 한편, 김영삼 정권은, 당시 정권의 정책으로 책정하고 OECD 가입을 위해 1996년 일본정부에 대해 6개월마다 대상품목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1999년 말까지는 대상품목 모두를 완전 철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욱이 1997년 말에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철폐기간을 6개월 앞당기는 약속이 이루어져, 同 제도는 1999년 6월말 폐지되었다.

(社)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1998년말 규제가 해제된 32개품목의 총수입에 점유하는 일본의 비중은 1997년 23.8%, 1998년 23.4%에 비해, 1999년 1~7월에는 32.4%로 상승하였다. 특히 일반 레플렉스카메라와 도자기제품(질그릇)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총금액기준에서도 1999년 1~7월의 同 32개품목의 對日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9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이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가 일본의 對韓수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아시아 통화위기의 영향을 받기 전인 1997년과 비교해 보면 1999년 1~7월의 총수입은 동기대비 2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同 32개품목의 일본으로부터의 총수입은 동기대비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총수입 감소에 비해 감소율은 낮지만, 수입규제가 이루어진 1997년 1~7월의 수준을 밑돌고 있다.

이 배경에는 경기요인 뿐만 아니라 한국이 ① 대상품목을 국산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② 산업구조변화로 인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필요성이 적어지고 있다 ③ 일본제품 이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④ 일본계 기업이 다른 국가·지역에서 생산한 것이 수입되고 있다 등도 생각할 수 있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해제는 아시아위기에서 회복되는 과정과 중복되고 있어, 그 영향을 단순하게 규제대상품목의 수입증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하다.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에 따른 일본으로부터의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은, 무엇보다도 경쟁력이 있으며 한국측의 수입수요가 있는 당해 일본제품에 대해 수량 제한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폐쇄해 온 것을, 규제해제로 시장을 개방한 결과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는 관세의 단계적 폐지 등에 의한 通常의 자유화조치라는 효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GATT/WTO의 무차별원칙에 관계되는 對日 차별적인 것이므로 그 해제는 무차별원칙이 마침내 일본에도 적용되게 되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日韓關係를 감안하면, 양국이 서로 「보통 무역상대국」이 된데 대한 의미는 크다.

이것은 日韓 경제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통과점인 동시에, 하나의 출발점이기도 하기에 日韓 양국에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금까지 본 제도의 규제대상 품목이었던,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日韓 기업간 사업제휴가 잇따라 발표되는 등 日韓 양국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 한다.

3-3. 서비스무역 현황과 장벽

서비스무역은 포괄적인 통계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무역제한조치가 명확하지 않는 등의 이유에서 분석결과를 얻기 힘들다. 그러나 日韓 서비스무역은 금액면으로도 비교적 규모가 크며, 또한 상품무역보다 훨씬 엄격한 무역제한이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GATT/WTO의 FTA 자격조건은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를 명시하고 있다. 자료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석해 보았다.

일본과 한국의 서비스무역 현황은 어떠한 상황일까?

서비스무역 패턴은 日韓 양국이 다르다. 일본의 경우 상품무역수지는 큰 폭의 흑자이고, 서비스수지는 큰 폭의 적자(수출은 수입의 50% 정도이다)이지만, 한국의 경우 1997년까지 상품무역수지, 서비스무역수지 모두 소폭의 적자를 보였다. 1998년에는 모두 흑자로 돌아섰으나 이는 경제위기로 인해 수출입이 축소된 이례적인 한해였다.

상품·서비스 합계 중 서비스의 비중을 측정하는 서비스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은 수출에서 13~14%, 수입에서 28~30%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이는 상품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서비스수입이 많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상품무역에 비해 서비스무역에서 경쟁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수출에서 15%, 수입에서 16~17%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서비스 통계를 보면, 일본은 적자, 한국은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일본의 對韓 비율은 수출이 4~5%, 수입이 3%대이지만, 한국의 對日 비율은 수출이 22%, 수입이 13~14%로 거의 4배나 높다.

주요 서비스품목별로 살펴보면 상호간의 수출입 경향이 현저하다. 일본의 경우, 운송, 여행,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특허권사용료 등이 수출입 모두에서 보여지고 있지만, 이는 對韓 무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편 건설 서비스는 對韓 수출이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통신, 금융에서는 對韓 수출비율이 높다. 한국 역시 운송, 여행,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은 수출입 모두 日韓 무역이 활발한 상태이다.

수출은 여행이, 수입은 특허권이 對日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특허권과 금융은 별도로 하더라도, 운송, 여행, 기타 영리업무, 통신 등은 거리의 근접성이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근접국인 점이 상호 수출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일본인의 해외여행지로는 한국이 195만명(1998년)을 기록하면서 제1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對日 여행에서도 한국이 101만명(1998년)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1998년에는 72만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대만(84만명)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였다. 또한 운송, 여행, 기타 영리업무, 건설에서는 한국측이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특허권사용료와 금융에서는 일본측이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한국 모두 서비스무역 장벽에 대해서는 GATS의 約束表에 기재하고 있다. 여기에는 4가지의 양식(1:越境去來(국경을 초월한 거래), 2:국내소비, 3:상업거점, 4:자연인이동) 각각에 관한 두 가지 측면(시장진입, 내국민대우)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정 제한을 둔다」 「(제한하지 않는다)약속하지 않는다」 가운데 어느것이든 한가지는 기입되어 있다. 그 외 「記載 없음」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약속하지 않는다」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보호 조치로서 4가지의 양식 모두가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양식 3은 직접투자에 따른 것으로서, 자본거래에 計上되며, 양식 4도 소득거래에 計上된다.

일본과 한국의 約束表 기재 내용을 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양식 4의 자연인이동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모든 분야·업종에서, 외국기업 관리직과 국내에서 얻을 수 없는 전문직의 일정기간내 활동을 제외하고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취업노동에 대한 제한이므로, 국내 서비스산업 보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GATS 제5조에는 서비스무역의 4가지 양식을 모두 자유화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연인이동에 관해서는 日韓도 포함해 모든 체결국이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FTA에 의한 완전자유화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 외 3가지의 양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패턴이 나타난다.

- A. 越境去來, 국내소비, 상업거점 등 어떤 양식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 B. 상업거점은 제한을 두지 않지만, 越境去來, 국내소비는 제한한다.
- C. 越境去來, 국내소비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상업거점은 제한한다.
- D. 3가지 양식 모두 제한한다, 또는 약속하지 않는다.

물론 A, B, C, D 順으로 무역장벽은 높아진다. C의 상업거점 제한은 지금까지 채용해 온 外資政策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 이를 約束表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측이 A보다 D가 많은 것으로 보아 서비스무역 제한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내용면으로는 양국에서 공통된 제한도 나타난다. 관광(여행)·전기통신·컴

퓨터·AV는 A에서 자유화되어 있으며, 은행·보험은 C에서, 교육·우편·우주운송(인공위성으로의 보급서비스 등)은 D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 외에는 한국이 더욱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의 B는 모두가 일본의 A이며, 한국의 C는 은행·보험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B이다. 일본의 C는 은행·보험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D가 된다. 예외로는 해상운송과 항만서비스인데, 한국에서는 1단계씩 제한이 적어진다. 일반적으로 GATS에서의 약속사항은 각국 모두 신중하기에,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제한이 부과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WTO 차기교섭에서 서비스자유화가 초점의 핵심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엄격한 서비스무역 제한은 자유화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日韓 서비스무역 패턴은 이 장벽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여행은 日韓 모두 자유화되어 있으며, 일본인의 한국여행이 한국의 일본여행보다 2배 이상 웃돌고 있는 것도 한국측의 제한 때문이 아니다. 단지, 일본의 소득수준이 높고 해외여행 비율이 높으며, 게다가 일본의 인구가 한국의 3배 정도이기 때문인데다가, 서비스가격에서 일본측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기 때문이라는 경제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타 영리업무도 제한은 완만하다. 그 밖에 통신·은행·보험·항공운송·행상운송은 양국 모두 C, D로, 상업거점 제한을 포함하여 엄격한 제한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처음 3가지는 향후 자유화가 진전될 경우 상호 수출입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 엄격한 오락서비스 제한도 자유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상품무역의 경우와 동일하게 日韓 FTA하에서는 제한조치 철폐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비즈니스 시야의 확대 및 한국의 소득수준 상승이 작용하여 서비스무역의 상호 수출입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요소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4. 日韓 투자 현황과 장벽

1998년말까지 일본의 對韓 투자(실행기준)는 누계로 50억 2,400만 달러이며 한국의 총투자 유입액의 23.4%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53억 2,027만 달러로 24.7%, 구주는 80억 9,398만 달러로 37.6%를 점유하고 있어, 일본은 구미와 함께 對韓 주요 투자국이다. 상대적으로 투자건수가 많고 비교적 투자금액이 작은 안건이 많다. 분야별로는 모두 제조업과 서비스가 거의 50%씩이며, 제조업은 화학, 전기기계, 운송기계, 일반기계 등이 중심이며, 서비스는 호텔이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금융으로 되어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1996~97년 사이 정체현상을 보인 반면, 미국·구주로부터의 투자는 계속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이 OECD 가입을 위해 여러부문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구미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을 때 아시아 통화위기로 인한 원화가치 하락과 함께, 그 후 적극적인 규제완화 추진이 동시에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적 조건에서 미국, 구주가 한국을 아시아의 제조거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감안, 일본의 제조거점과 한국의 제조거점을 보완적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근년 일본의 경기침체와 상당부분의 일본의 對韓 투자가 일본이 추진한 세계화 초기단계에서 이미 실시된 것과 같이하기에, 최근 일본의 對韓 투자액이 구미에 비해 적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기업에 의한 對日 투자는 1980~99년 9월까지의 누계로 5.4억 달러, 이시아위기 前에도 연간 1억 달러이다. 무역업이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20% 정도로 적다.

한국정부는 김영삼 정권하에서 외자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해 왔다. 1997년말 이후에는 외화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접·직접투자의 장해가 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를 가속화하여, 현재 업종상의 직접투자 제한은 극히 한정되게 되었다. 99년 4월 현재, 미개방 업종은 어업, 방송업 등 7업종, 부분개방업종은 신문발행업, 정기통신사업 등 16업종이다.

직접투자의 신청절차는 김영삼 정권때 크게 간소화되었다. 通常의 투자는 외국 환은행(외국계 은행의 한국내지점 포함) 창구에서 하게 됨에 따라, 과거 투자장벽으로 지적되어 온 관청의 창구규제는 없어졌다. 또한 외자계기업에 의한 토지의 소유제한도 단계적으로 완화되었다.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벽과는 다르지만, 중요한 문제로서 對日 문화규제가 있다. 본 규제는 일본의 영화상영·방영, 가요공연 및 이들을 녹음·녹화한 비디오, CD, LD 등의 영상·음향미디어의 수입 등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對日 문화규제는 영화, 음악 CD 등의 상품무역과 리사이틀 등의 서비스무역에 있어 직접적인 장해요인일 뿐 만 아니라, 일본 기업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킴으로써,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日韓間 비즈니스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에서 단계적인 폐지 방침이 표명된 이래, 두 차례에 걸쳐 부분 해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일본의 對韓 투자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 日韓 가격비교

무역제한 조치가 있으면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는 차이가 생긴다. 日韓 양국간에는 제한조치에 큰 차이가 있거나, 日韓間에 상대측 産品에 제한조치가 있으며, 日韓間 동질적 품목에 대해서도 가격차가 생긴다. 따라서 가격비교를 해보면 관세와 비관세 조치도 포함한 무역제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목적으로 日韓 물가비교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동경과 서울에서 1999년 8~10월에 35 품목에 대해 실시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에는 공공서비스와 民生品 등을 중심으로 소매가격을 조사하였다. 각각 엔/원 환율 및 수량차이를 조정한 日/韓 가격배율을 산출하였다.

전반적으로 배율이 1이상으로, 일본의 물가가 높은 것이 많다(35품목중 29품목). 일본의 물가가 낮게 나타난 것은 수도요금, 복사용지, 명함, 목욕타올, 비디오 테잎, 휴대전화와 휘발유이다. 도시교통, 전화, 가스, 우편 등의 공공요금은 일본이 한국의 2~4배로, 이발, 구두닦기 등 서비스요금도 2~3배 정도이다. 이밖에 쌀, 우유, 맥주, 화장지, 와이셔츠, 전기밥통, TV, 에어컨 등 생필품 및 자동차, 시멘트는 1배 정도이다. 전구, 연필, 의류, 전자렌지, 냉장고 등은 2~4배이다.

日韓의 임금격차는 거의 2.3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생필품류는 거의 근접한 것이다.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은 이 같은 인건비 격차와 정책적 低가격 요소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4배의 가격차가 있는 것은 품질차이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이들은 시장메커니즘이 작용한 후에도 잔존하는 균등가격차의 요소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재·산업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상산업성의 『산업의 중간투입에 관한 내외가격차』 조사가 소분류까지 나누어 1995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을 비롯해 미국·독일·중국 등과의 비교도 포함되기에, 日韓의 물가 차이를 세계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日韓間에는 산업서비스 분야에서 일본이 3.5~5배, 광산물·목재품이 4배 정도, 요업·종이펄프·화학품·일반기계·전력 도시가스가 2배 정도, 운송용기기·철강·비철금속·금속제품이 1~1.6배, 전기기기만이 0.66배로 일본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對美에서는 산업서비스·에너지분야가 1.1~2.3배 이지만, 전술한 대부분의 공업제품은 1를 밑돌고 있어, 일본이 비교적 낮다. 원래 가격차 계산에서는 환율환산이 들어가, 日韓의 물가 차이는 1998년도 이후 원화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일본

이 비교적 높게 되었으며, 日美 물가차이는 1995~98년도 엔低 영향으로 일본이 낮게 되었다.

본래 1998년도 후반 이후의 엔高 현상, 원화시세의 회복세로 인해 엔/원 환율은 1998년도 후반 이후의 엔高현상, 원화시세의 회복세로 인해 엔/원 환율은 1998년도 보통이지만, 엔/달러 환율은 1996년도 수준까지 하락하여 일본이 비교적 낮게 되어 있다. 환율·변동의 물가차이에의 轉移는 완전하지 않으며, 2~4배의 日韓 물가차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日韓間의 현실적인 가격차는 이 밖에도 소득 수준차이와 생활습관 차이, 정책적 低가격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된다.

1. 현실 가격차가 8%에서 높게는 20%대의 관세율에서 직접 발생하는 가격차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高비용 체질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기업이 긴 세월동안 쌓아온 비즈니스 습관이 외국기업이 참가하여 경쟁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래 이것은 한국측에도 해당되는 것으로서, FTA라는 새로운 현실적 시도는 참가국의 이러한 비즈니스 관행도 교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2. 그래도 2~4배의 가격차는 시장경쟁을 촉진시킨다. 日韓 FTA가 실시될 경우, 관세철폐는 물론, 국경을 초월한 시장경쟁이 침수하여, 低가격품이 상호 수입되게 된다. 2.3배의 임금·소득이 높은 일본도 低가격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격차의 존재는 경쟁면에서 한국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日韓 FTA로 가격차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축소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본래 이것은 개선되기 어려운 高비용 체질과 비즈니스 관행에 의한 경쟁제한을 교정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은 확실하다.

4. 日韓 FTA 효과

4-1. 관세철폐 효과의 靜態的 推定

日韓 FTA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일까? 우선 관세 및 비관세조치 철폐에 의한 무역의 확대를 들 수 있다. 日韓의 비교우위가 뚜렷한 분야에서는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저하하고, 수입량이 확대한다. 이것이 지역통합에 의한 무역창출 효과이며, 그 크기는 관세 인하폭에 대체 탄력성을 곱해서 얻은 수입증가율을 현재의 수입액에 곱한 정태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된다. 한편, 관세 등 기타 장벽이 그대로 유지되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는 무역전환 효과도 발생한다. 그 크기도 靜態的인 前提를 가지고 계산된다.

日韓間에는 일본에서 비교적 높은 관세가 남아있는 섬유품, 잡화품, 수산물의 對日 수출이 증가하고, 한국이 수입선 다변화제도로 제한한 기계류의 對韓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만이 日韓 FTA의 효과인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日韓間 현실적으로 저급품·고급품이나 부품·완성품을 상호 수출입하는 산업내 분업형의 무역형태가 많지만, 이러한 분야에서는 관세·비관세 조치가 0% 아니면 低率이기 때문에, 이 靜態的 분석으로는 포착될 수 없는 것이다.

4-2. 市場一體化에 의한 動態的 效果

以上은 靜態的인 전제를 기본으로 한 계산으로 日韓 FTA 효과의 일부를 推定한 것뿐이다. 日韓 FTA는 日韓 양국간에 관세나 비관세 조치만을 철폐하는 狹義의 FTA는 아니다. 「日韓 經濟 Agenda 21」이 내놓은 투자협정·기준인증·지적 소유권 등까지 광범위한 양국간 협력을 포함하고 있고, 日韓市場을 일체화시키는 제도적 조직을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動態的인 효과가 발생한다.

日韓 양국의 인구는 1억 7천만, 약 5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출현한다. 그것은 거의 미국의 3분의 2에 달한다. 이 統一市場을 구성하는 日韓 양국에는 공통점과 상이점이 존재한다. 모두 중간 소득층이 두텁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일본측이 2.3배의 임금·소득격차가 있으며, 일본의 경제규모는 한국의 약 9배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미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비감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비해, 한국은 아직 20년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소비수준 향상은 당분간 지속된다. 한국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크며,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아직 남아 있는 성장활력과 경쟁자극이라는 것이 큰 매력이다.

日韓市場의 일체화가 진행될 경우, 양국간 경쟁관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첫째로, 日韓 기업이 상대시장에서의 영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쟁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前節의 日韓間 무역패턴 분석에서도 본 바와 같이, 日韓 양국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식료품, 의약품, 운송·여객 서비스 등에서도 日韓間 거래비율은 높다. 거리에 의한 障害는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세·비관세 조치 이외의 요인이 작용하여 상호 연대적인 기업활동을 억제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품목에서의 물가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日韓市場의 일체화는 日韓 양국의 기업에게 종전보다 더 강한 경쟁압력을 유발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모든 분야가 일본기업에 의해 석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그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예측이다. 日韓市場이 일체화됨에 따라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기업이 모습을 감추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쟁력이 있는 한국기업은 일본시장이라는 거대한 市場에 보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되는 등, 規模의 利益이라는 은혜를 입게된다. 따라서 오히려 많은 분야에서 한국기업이 살아남게 되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체화된 日韓市場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창출되는 것은 아닐까. 3-5에서 검증한 2~4배의 물가 차이는 분명히 한국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둘째로, 日韓 기업간의 경쟁이 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日韓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도 많은 분야에서 일어날 것이다. 日韓 양국 모두 국내기업에 의한 不採算 부문으로부터의 철수, 흡수합병에 의한 전문부문의 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지금까지의 경쟁상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적지 않다. 日韓 기업간의 제휴도 이미 몇 件 정도가 진행되고 있어, 전술한 경쟁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미 日韓 기업간에서 기술면에서의 상호공존이 진행되어 온 분야에는 각자의 전문(特化)분야에서의 기술개발 분업·상호이용이 등장할 것이다. 더욱이, 일본기업은 많은 분야에서 중국·동남아시아로 진출하여, 생산재배치를 실시하고 있어, 일부 한국기업도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동남 아시아와의 국제분업·생산재배치도 日韓 기업간 제휴의 유망한 분야이다.

셋째로, 일체화된 日韓市場은 日韓 기업뿐만 아니라 아시아 진출을 고려하는 구미기업을 보다 많이 끌어들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 한국 모두 현재 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조치를 취하면서, 대규모 흡수합병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경쟁격화와 기업제휴도 구미기업을 포함하여 전개한다고 생각함으로써, 日韓市場 일체화의 효과는 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日韓市場의 통합은 한국측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외국 기업은 보다 큰 시장에 매력을 느끼며, 보다 큰 국가와 통합하는 국가는 자국시장만으로는 끌어들이 수 없던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멕시코가 NAFTA로 인해 미국시장으로의 판매를 기대하는 외국기업을 끌어들이었으며, 튀니지가 EU와의 연합관계를 통해 EU市場으로의 접근을 이용하려는 域外企業을 유치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은 9배의 규모인 일본시장과 통합하는 것으로 큰 메리트를 얻게 된다.

넷째로, 관광객에서 사업가까지 인적교류가 비약적으로 활발해질 것이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항공편의 增便, 비자문제 등 교류의 인프라 준비가 일시에 진행되리라 기대된다. 한국은 국제공항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리타(成田)와 간사이(關西)공항보다도 서울이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대응해서 외국인노동력의 수입마저 검토되고 있어, 한국으로부터의 숙련공이나 연구개발요원의 유입이 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人的往來의 활발화는 고령화로 인한 소비감소를 억제함과 동시에, 문화적 영향이나 정보확산을 통해 소비시장의 유사성을 높일 것이다.

이러한 경쟁격화·기업제휴·외국기업유치의 효과는, 전술한 일본 내지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확립하고 있는 분야부터 양국이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日韓間에도 상호수출입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에서 보다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산업내 분업이 더욱 촉진된다.

이러한 動態的 변화에서는 日韓의 기업구조·생산구조·무역구조도 크게 변화함으로써, 그 무역창출 효과는 靜態的 분석보다도 훨씬 크게 나타날 것이다. 日韓 FTA 형성으로 靜態的 분석이 파악할 수 있는 관세·비관세조치 철폐효과뿐만 아니라, 경쟁격화·기업제휴 등에 의한 動態的 효과를 가져다주는 점은 독자도 긍정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動態的 효과는 수량적 예측이 곤란하다. 그 효과의 크기는 관세·비관세조치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하는 단순한 관계는 아니다. 관세철폐에 의한 가격저하를 계기로 경쟁촉진과 기업제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시장의 성장성이나 기술개발의 가능성 등이 결정적인 수단으로 되기 때문이다. 기계, 화학, 금속 등 현실적으로 日韓間에서 산업내 분업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의 산업정보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4-3. 日韓 FTA효과의 산업별 전망

前節의 분석에 따르면, 日韓 FTA의 주요산업별 효과의 예상을 시험해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섬유·의류, 화학, 금속, 일반기계, 전기기계, 他제조업품, 운송서비스, 여행서비스, 기타 서비스(영리업무, 건설, 특허권 등)의 10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는 전부 日韓 주요수출품·서비스 품목별이며, 또한 대부분이 日韓間에서 무역도 활발하다. 원료와 광물성연료는 일본, 한국 모두 주요 수입품이지만, 주로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日韓 FTA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는 없다.

효과예상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3節에서 나온 산업별 무역패턴, 관세·비관세 조치 및 물가가격차의 특징을 파악한다. 무역패턴에는 日韓 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섬유·의류에서는 한국이 우위이며 큰 폭의 수출초과 상태이다. 화학·금속·일반기계·전기기계·他제조업품에서는 日韓間에 상호수출입이 활발하지만, 일본측의 수출초과로 되어 있다. 운송기계의 日韓間 무역은 극히 적다. 운송, 여행, 기타 영리업무, 건설서비스에서는 日韓間 상호수출입은 활발하지만, 한국측의 수출초과이다.

한편, 특허권 사용료에서는 일본측의 수출초과이다. 관세에서는 일본이 섬유·의류와 他제조업품의 일부에서 비교적 높은 관세를 남겨두고 있지만, 기계·금속에서는 무관세이거나 극히 낮다. 한국에서는 철강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관세철폐를 약속했지만, 기계·화학에서는 대부분이 8%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가격차는 일본이 2.3배의 고임금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비교적 높지만, 그것을 더욱 상회하는 3~4배인 분야가 있다.

더욱이 제 4節에서 서술한 FTA 형성의 2가지 효과인 관세·비관세 조치철폐와 動態的 효과를 적용한다. 動態的 효과에 대해서는 각종 산업정보도 참고로 했다. 이렇게 해서 얻은 결과를 表 1에 정리하였다.

表 1 日韓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효과

주요 품목별	일본 및 한국의 생산·무역·투자에 대한 영향
섬유·의류	· 일부 高관세의 철폐로 일본의 對韓 수입이 증가한다. 일본기업은 고급화, 패션화로 대항하여, 對韓 수출증가도 가능하다.
화 학	· 기술수준·경쟁력 모두 日韓은 근접해 있다. 일부 남아있는 관세의 철폐로 상호수출입은 증가할 것이다. 日韓 쌍방 모두 과잉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설비폐기에서의 협조, 각각 우위품에서의 생산분업의 가능성이 있다. 合纖재료에서 日韓기업의 분업 가능성, 구미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있다.
금 속	· 철강은 UR에서 양국 모두 관세철폐, FTA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과잉설비 해소의 협조, 일본의 높은 코스트에 따른 日韓 기업의 전략제휴에 의한 생산분업이 진행하고, 상호수출입이 증가한다.
전기기계	· 가전에서는 한국기업의 추격으로 對日수출도 증가했지만, 수입선다변화제도와 관세로 보호되어 온 요소도 있다. FTA로 경쟁이 격화 되겠지만, 일본기업과의 제휴에서 기술이전, 생산분업의 가능성이 있다.
일반기계	· 일본의 경쟁우위, 한국측의 8%관세 철폐로 일본의 초과수출이 확대한다. 한국측은 일본기업과의 제휴에 의한 기술이전, 저비용을 활용한 생산분업·상호공존의 가능성이 있다.
운송기계	· 승용차는 日韓 모두 제3국 수출이 활발하지만, 상호수출입은 미미하다. 한국측의 자유화(완성차 8%, 부품 13%, 관세 철폐)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이 증가하지만, 한국으로부터도 저가격품의 對日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부품산업에서의 일본기업 진출, 수입대체도 가능하며, 기술수출 증대도 있다.
他제조업품	· 관세철폐로 일본의 對韓 수입이 증가하겠지만, 품질면에서 제약도 있다. 가구 등에서 비용의 우위를 이용한 한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도 가능하다. 일본으로부터의 잡화품 브랜드 물건의 수출도 증가한다.
운송서비스	· 상호수출입이 진행하겠지만, 한국의 코스트 우위로부터 한국측의 초과수출은 계속될 것이다.
여행서비스	· 비자수속의 개선, 항공·해상서비스의 상호연대로 상호교류 증대한다. 그러나 한국측의 低물가로 한국의 큰 폭의 초과수출은 계속될 것이다.
기타 서비스	· 他영리업무를 비롯한 서비스에서 상호수출입이 증가하겠지만, 한국측은 건설서비스에서, 일본측은 특허권사용료, 금융서비스에서의 우위는 계속될 것이다.

5. 日韓 경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

日韓 무역투자는 기본적으로는 시장메커니즘에 근거하여 확대해 왔지만, 그것을 보완하여 정부차원·민간차원에서의 경제협력이 실시되어 왔다. 日韓 FTA의 형성을 향한 이러한 노력은 더욱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 日韓 산업기술협력

우선 기본적인 인식으로는 일본기업의 對韓 직접투자와 한국기업과의 기술제휴 등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의 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기업은 구미기업에 비해 한국으로의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다는 의견이 한국에서 자주 거론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기업의 공헌은 결코 적지 않다. 제 1節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日韓 間의 무역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日韓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여러 기관에 의해 다양한 협력사업이 실시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해외기술자 연수협회·해외무역개발협회·日韓 산업기술협력 재단 등 3개 실시기관에 의한 한국연수생의 유입·일본인 전문가의 파견 등의 기술 협력을 들 수 있다. 특히, 해외기술자연수협회에 의한 한국연수생의 유입실적은 98년까지 6,400명에 도달하고 있어, 지원대상국 가운데 비중은 상당히 높다. 해외 무역개발협력회의 전문가파견은 158명, 日韓 산업기술협력재단은 643명의 유입과 141명의 파견으로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다. 3개 실시기관 합계로 약 7,000명의 연수생을 받아들이고, 약 300명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기술협력에서 최대의 지원국이며 한국의 기술향상에 크게 공헌해 왔다. 이것은 민관 공동에 의한 기술협력이지만, 이 외에도 국제협력사업단(JICA)과 일본무역진흥회(JETRO)를 통한 정부차원에서의 기술협력과 무역투자촉진 사업이 있다.

이러한 교류사업과 기술협력은 민간차원의 기술이전 촉진과 日韓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의 요청에 답하고자 일본측이 실시했다. 무역수지 불균형이 부품·중간재·기계설비를 對日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산업구조에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내에서의 중소부품기업 등 기반산업의 육성을 더 이상 지연시키면 안 된다. 일본의 기술협력은 장기적으로는 正의 방향으로 도움이 된다. 한국의

OECD 가입으로, 2000년 1월부터 對韓 원조는 ODA에서 계산되지 않게 되어, 일본의 정부차원에서의 협력은 점점 쇠퇴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의 기술이전이 실시되는 장치를 구축해 나가야만 한다. 「日韓 經濟 Agenda 21」은 투자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4-2에서 서술한 日韓 FTA의 動態的 효과를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것을 실효적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21세기 日韓關係에서 中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5-2. 日韓間의 어업문제

以上是 주로 제조업분야에 관련한 것이었지만,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도 日韓 양국은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해결에는 적극적인 합의를 형성하는 노력과 협력이 요청된다. 하나는 日韓間의 어업문제이다. 日韓이 공통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주변 수역에서는 양국어민에 의한 정어리, 고등어, 꽂치, 게 등의 어획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자원의 관리·보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공통의 자원의 관리·보전을 둘러싼 日韓 정부간의 교섭은 난항이 거듭되어 왔다.

현재의 新어업협정에서는 대화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暫定水域을 설정하고, 旗國主義에 의한 관리를 실시하는 등 극히 잠정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다. 日韓 양국이 각각의 管轄水域에서 공통의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의 자원관리에 대한 자세에는 큰 격차가 있다. 제 3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日韓間의 수산물 무역은 한국의 수출이 일본 수출의 30배에 달한다. 日韓 양국간에 공유하는 수산물에 대한 자원관리나 지역사회의 유지관점에서 수입제한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비교적 高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도 일부 수산물에는 높은 調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등, 어업에서 양국의 실정은 상당히 복잡하다. 자원의 공동관리와 이용면에서의 협력강화가 불가피하다.

5-3. 농림수산업분야의 협력

또 한가지는 농업이지만, 양국에는 공통점이 많다. 양국 모두 쌀, 보리, 낙농품, 牛肉, 豚肉, 설탕 등 특정의 품목에 대해 국경보호정책과 결합된 價格支持定策을 가지면서 국내농업을 보호해 왔다. 양국 모두 곡류의 자급률은 30%이지만, 쌀에 한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최저수입량을 유입했지만, 국내자급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전개가 강구되고 있다. 양국 모두 쌀은 자급하면서 사료용의 곡물은 압도적

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수급 구조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야채, 과일, 육류, 우유·유제품에 대해, 한국은 그 대부분을 자급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수입의존을 강화해 왔다. 양국 모두 농업자원 부족국이며, 영세규모의 농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專業 농가율은 한국이 57%로 일본의 17%보다 훨씬 높다. 日韓間의 농산물 무역은 미미하지만, 이것은 양국 모두 민감한 품목을 국경조치를 실시하여 국제시장으로부터 격리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日韓 각각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공업국에서 농림수산업의 유지·발전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근거로 해서, GATT규정에 整合的이며, 또한 양국의 관계자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처리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日韓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日韓의 농림수산업이 공존·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경보호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식료안전보장, 국토, 자연자원의 유지·보전, 농어촌지역의 진흥 등 日韓 공통의 농림수산업 정책상의 중요 과제에 대해 공동의 정책연구가 중요하다.

6. 日韓 FTA효과의 定量的 평가

제 4節에서 日韓 FTA의 靜態的 효과와 動態的 효과를 들어, 後者の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서술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例示하기 위해 CGE모델을 사용해서 定量的 평가를 실시했다. CGE모델은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CGE(계산 가능한 일반균형)이기 때문에 몇 가지의 제약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용한 CGE 모델에서는 日, 韓, 美를 포함한 7개국·지역이 특정된 세계적 모델이며, 섬유·의류, 금속제품, 전자기계를 포함한 11개 부문의 대략적인 산업분류로 되어 있다.

靜學的 모델이며, 정책시행전과 시행후의 2가지 균형상태를 비교한다. 생산물도 생산요소도 수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상품·요소가격이 신축적으로 움직인다. 단,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외환시세 및 이자율은 外生的으로 부여한다. 생산기술이나 소비선호는 不變이며, 정책변화의 시뮬레이션은 외생변수 또는 parameter를 변화시켜서 계산한다. 각국의 무역·생산 및 관세율 통계는 이런 종류의 CGE 분석이 자주 이용하는 미국 Purdue 대학의 GTAP4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했다. 제 4節의 분석에 따라 관세철폐와 FTA형성의 動態的 효과를 측정하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다.

6-1. 관세철폐효과의 추정

우선 日韓 양국이 FTA를 결성하면 일본의 관세조치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해 철폐되고, 한국의 관세조치는 일본수출에 대해 철폐된다. 한국 수출품의 일본내 판매가격은 관세부분만큼 저하하고, 일본 수출품의 한국내 판매가격도 관세부분만큼 저하한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한국에서 각 부분의 생산과 소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다시 균형에 도달하도록 각 부분의 가격이 변동한다. 그 결과 日·韓의 무역수지도 흑자 혹은 적자가 변화하지만, 우리의 CGE모델 결과 이 收支差는 자본이동으로 완전히 조달된다(시뮬레이션 1, 또는 S1: 관세철폐·완전 transfer). GTAP 데이터베이스는 관세율에 비관세조치를 관세화시킨 부분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日韓 데이터를 실제로 체크해 보면, 대부분 관세율만 해당되고, 수입선다변화제도나 농수산물에서의 수량제한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 기준년차에서의 일본의 對韓 수출은 한국의 對日 수출보다 크며, 또한 한국의 관세율은 일본의 관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관세를 철폐할 경우 일본의 對韓 수출증가는 16.3%로, 한국의 對日 수출증가 8.3%를 상회함으로써, 일본의 무역흑자는 34.5% 확대한다.
- 日·韓 양국의 對美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한다. 일본의 對美 수출은 0.14% 증가, 수입은 0.27% 감소하는데 반해, 한국의 對美 수출은 1.6%, 수입은 2.9% 감소한다.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미국제품이 日韓 양국시장에서 비교적 비싸게 되는 무역전환 효과 때문이다. 對美 수출의 증가는 이러한 간접효과에 의한 것으로 그 규모는 소폭이다.
- 日·韓 양국의 對세계 무역은 수출입 모두 소폭 증가하지만, 한국측이 크다. 이는 日韓間의 무역확대가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수출증가가 수입증가보다 크기 때문에 흑자 폭이 8.2% 확대한다. 한국에서도 수출증가가 수입증가를 상회하므로 적자 폭이 4.1% 축소한다. 세계무역의 증대는 0.11%로 작다.
- 일본의 부문별 생산량은 일반기계가 0.5%, 他제조품이 0.2%, 금속이 0.1% 증가하지만, 전기와 서비스에서 약간 감소한다. 가격(관세제외)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한편, 한국에서는 섬유가 2.9%, 일반기계가 1.2%, 전기기계가

0.9% 증가하는 등, 全부분에 걸쳐 증가한다. 가격은 대부분 0.4~0.9% 낮아진다.

- 이러한 생산구조 변화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래 이 모델은 완전고용이 유지되도록 임금이 변화하기 때문에, 임금의 높고 낮음에 따라 노동이 초과수요인지 초과공급인지가 판단된다. 일본은 임금률의 변화는 없지만, 한국에서는 숙련노동이 초과수요가 되고, 미숙련노동은 과잉상태가 된다. 숙련노동을 보다 많이 고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 관세철폐의 후생효과를 측정하는 실질국민소득은 일본에서는 변화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0.3% 증가한다.

代替的인 CGE 모델에서는 세계 총 저축의 각국·지역에 대한 배분이 기준년 차의 비율로 할당되고 있어, 그것을 조달하는 형태로 자본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세철폐 결과의 收支差가 이 자본이동 할당을 초과할 경우 더욱 교역조건이 변화하여 收支差를 그 범위내에 머물도록 하는 조정이 이루어진다(S2: 관세철폐·불완전 transfer). KIEP의 관세인하에 대한 CGE모델 분석은 이러한 假定하에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 수지적자가 자본유입의 할당한도를 초과할 경우,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收支差를 한도내로 유지하도록 생산과 수출입 조정이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수지흑자가 자본유출의 할당한도를 초과하면, 교역조건을 개선시켜 收支差를 한도내로 유지하도록 생산과 수출입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주로 全부분에 걸쳐 수출가격 인하, 수입가격 인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 이에 따라, S2의 경우 일본의 對韓 수출증가는 16.9%, 수입감소는 8.0%, 무역수지흑자는 37.1%로, S1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다. 본래 한국의 對세계 수출증가는 2.1%로 S1보다 작고, 수입증가는 3.1%로 크기 때문에, 무역수지적자는 반대로 확대된다. 즉, S2의 경우 한국의 무역수지적자는 확대하지만, S1에서는 감소하므로 반대로 된다. 그러나 실질국민소득증가는 일본은 거의 없지만, 한국은 0.38% 증가한다.

분명 현실적으로는 이 2가지 假定의 중간으로, 자본이동이 활발하게 되면 될 수록 S1에 가깝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가정에 의한다고 하여도, CGE모델에 의한 관세철폐의 효과는 日韓 무역에서는 크지만, 日韓 전체의 생산, 무역, 가격

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6-2. 動態的效과의 假定

FTA의 動態的效과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전히 CGE분석이 관세철폐 효과의 계산만을 반복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역시 動態的 效과에서는 관세율과 같은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관세철폐 효과도 大部門分類로 계산한 평균관세율에 적용하거나, 비관세조치가 포함되지 않는 등의 실정 등을 고려하면, 대략적인 數値例計算의 범위는 넘지 않는다. 따라서 動態的 效과에 대해서도 대담한 假定을 도입하여 동일한 數値例計算을 실시해 보기로 한다.

제 4節의 動態效과의 산업별 전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계·금속·화학 등의 부문에서 다른 것을 상회하는 생산성 상승이 실현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문에서 관세율은 낮기 때문에 관세철폐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FTA에 의한 경쟁촉진, 기업제휴, 외자유치가 유발하여 생산성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전술한 모든 부문에서는 생산성이 30%, 섬유나 他제조업, 서비스는 10%, 1차 산업에서는 생산성 상승이 없다고 가정한다. 이는 日韓 양국에서 공통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FTA 결성까지 10년 걸린다면, 年평균 1~3%이므로, 그렇게 매우 높은 설정은 아니다(S3: 관세철폐·생산성 상승). 이렇게 해서 계산한 動態的 效과는 관세철폐의 靜態的效과와 다르고 또한 훨씬 크다. 兩者를 합친 FTA의 效과는 動態的 效과에 지배되는 것으로 된다.

- 日·韓의 기계류, 금속부분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상승할 경우, 일본은 20~30% 생산량이 증가, 가격은 15~16% 저하한다. 한국도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지만, 생산량은 23~46% 증가하므로 일본보다 매우 크며, 가격은 12~15% 감소로 나타났다.
- 일본의 對韓 수출·수입 모두 증가한다. 동태적 효과만 보면, 관세철폐에 비해 수출 증가는 거의 동일하고, 수입 증가는 매우 크다(11%)고 할 수 있어, 수지흑자 증가는 25%로 작다. 그러나 관세철폐 효과의 SI로 加算할 경우, 수출 증가가 32%, 수입 증가는 20%로 나타나, 수지흑자는 59% 확대된다.
- 일본의 對美 수출은 일본제품 가격저하에 의해 크게 증가(36%)하고, 수입은 감소(10%)하여, 對美 흑자는 확대(122%)한다. 한국의 對美 수출·수입도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지만, 그 정도는 크며(35%와 16%), 對美 적자에서 85억

2,200만 달러의 흑자로 전환된다.

- 일본의 對세계 수출도 34% 증가, 수입은 6% 감소로 흑자가 확대된다. 한국의 對세계 수출 역시 30% 증가하고 수입도 0.02% 증가함으로써,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
- 이로 인해 미국의 對세계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게 되어, 적자규모는 확대되지만, 간접효과이기 때문에 변화는 日韓보다 훨씬 적다. 세계무역은 0.71% 증가하게 된다.
- 그러나 실질국민소득 증가를 보면 일본은 10.45%, 한국은 9.11%로 크게 나타났다.
- 정태적 분석의 경우와 동일하게 임금을 변화를 가지고 고용효과를 살펴보자. 생산성 상승에서는 가격변화 폭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은 현저히 나타난다. 숙련노동, 미숙련노동 모두 실질임금은 10% 정도 상승한다. 즉, 숙련노동, 미숙련노동 모두 초과수요가 되면서 고용증가 방향으로 움직인다. 日韓 양국 모두 숙련노동임금 부분의 상승률이 약간 높고, 숙련노동 증가가 크다.

이 모델은 가격조정이 중심이기 때문에 가격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즉 미국 등 제3국에의 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큰 폭의 적자 확대는 엔/원의 對달러 환율을 절상시키고, 그 부분만큼 日韓 양국의 교역조건 악화를 상쇄하므로, 그만큼 가격변화는 적게될 것이다.

日韓 FTA에 의해 발생하는 동태적 효과는 日韓 이 외의 국가와의 무역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를 관세·비관세조치의 무차별철폐에 의한 무역전환 효과와 동일시하여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CGE 모델은 10년동안 日韓 양국만이 변화하고, 다른 국가는 변화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FTA의 동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해 본 시뮬레이션이므로,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본래 이 시뮬레이션은 현실의 一面을 전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양국이 공동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경우, 이 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위의 국가들은 「貿易轉換的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는 차별적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무역전환 효과라는 것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7. 日韓 FTA 형성을 위한 노력

7-1. 「日韓 經濟 Agenda 21」의 構圖

「日韓 經濟 Agenda 21」은 조세조약과 투자협정 체결, 기준인증, 표준, 지적 소유권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등, 폭 넓은 정부간의 협력 구도를 제시하고 있다. 日韓 양국정부는 조세조약과 투자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이미 교섭을 실시하고 있다.

日韓 조세조약은 상대국기업·개인의 자국내 활동에 대한 課稅와 관련한 것으로서, 이미 1998년 10월에 서명되어, 1999년 11월 22일 발효된 상태이다. 투자협정은 日韓 기업의 상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1999년 2월부터 예비적 협의를 개시하였다.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투명성 확보 의무, Performance 요구 금지, 투자재산 보호 및 수익송금의 자유, 분쟁해결 절차를 투자보호와 투자환경 정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기준인증은 양국간의 상품·서비스의 원활한 이용과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상호 제도를 존중하면서 상대국에서 행한 적합성평가 절차 결과 등의 상호유입을 모색한다. 표준은 국내가격의 國際整合化, 국제규격개발 표준화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적소유권분야는 심사기준 등의 운용 調和, 모방품대책 협조, WTO, WIPO 등의 국제규범 책정 등, 지적소유권 보호의 공통기반을 구축하는데 협력한다. 이러한 조치는 日韓間의 상품, 서비스, 자금,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동태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7-2. 최종목표는 FTA

현재의 FTA는 상품·서비스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포괄하여 완성하는 데는, 자유화를 중심 핵으로 하는 FTA의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선 개별협정 교섭과 경제협력안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것부터 실시해 나간다. 이에 대한 제도적 틀의 기본으로 FTA를 설치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FTA는 최종목표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FTA 교섭을 시험해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아니다. FTA 제안은 최종목표를 명시하고 노력을 경주하는 비전이며, 이러한 목표없는 개별교섭이 난항할 경우 日韓 경제관계 긴밀화의 중요성을 쉽게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개별교섭과 병행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FTA의 구도에 대한 교섭에도 착수하고, 조기에 합의에 도달하여 폭 넓게 FTA의 구도를 제시한다. 그 후 타당한 기간내에 단계적인 자유화를 포함하면서 준비해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日韓 經濟 Agenda 21」은 관세·비관세 조치철폐라는 狹義의 FTA를 포함하지 않지만, 이 두가지를 모두 합친 日韓經濟 一體化야말로 FTA의 새로운 현실적인 시도이다.

7-3. 통화·금융협력 추진도 필요

통화·금융측면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日韓關係 긴밀화에는 이 부분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엔/원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日韓間의 무역·투자확대는 지속되지 않는다. 1997년 아시아통화위기가 일어난 원인은 東·東南아시아국가들이 한결같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美 달러에만 고정하는 외환정책을 추진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反省으로 美 달러외에 EURO와 엔을 포함한 통화비스킷에 고정시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식에서는 원화 환율이 美 달러와 엔화 환율의 변동에도 조정되어짐에 따라, 엔/원 환율을 안정시키게 된다. 일본은 아시아통화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과 같은 유동성 지원조치와 병행하여 안정된 통화체제 구축과 엔화의 신속한 국제화를 위해 경주하고 있다.

이와 함께 日韓 상품·서비스시장의 統合化에 맞추어 日韓 금융·자본시장의 統合化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日韓 상호연대에 의한 경쟁추진도 불충분하게 될뿐만 아니라, 日韓間의 기업제휴도 억제된다. 日韓 양국정부는 자국의 금융시스템을 세계표준에 맞추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술한 금융서비스 자유화교섭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자국의 금융·자본시스템을 공통적으로 되도록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양국간 협력의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

만성적인 對日 무역적자에 대한 한국측의 관심은 높으며, 일본측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수지 불균형은 日韓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공업화가 고도화되면서 일본을 쫓아 업함에 따라, 또한 일본 인구의 고령화·小子化(낮은 출생률)가 진행되면서 저축률 저하, 경상수지 적자화가 진전됨에 따라, 반드시 해소되어 간다. 이를 무리하게 저지할 경우 수입선다변화와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때까지 한국은 일본의 선진기술과 자본수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다 더 자연

스런 방향은 한국측의 적자규모를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유출로 대체할 수 있다면, 적자 조정부담을 한국에게 전부 떠 안게 하는 Transfer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본유입이 민간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자본시장의 一體化가 필요하다.

8. 아시아태평양, 세계 속의 日韓關係

1998년 12월에 열린 “日韓 經濟關係 緊密化 研究會” 설치제안에는 중국, 동남 아시아각국, 미국,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지역뿐만 아니라, EU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자유화 흐름에서는 자신의 지역통합 관련외에도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특히 일본과 한국이라는 주요무역국의 관계긴밀화에 의해 자국의 무역·투자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되는가, 전환효과와 차별화를 받지는 않을까 등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日韓 양국뿐만 아니라, 제3국이 보이고 있는 관심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3국에 보내는 우리들의 메시지는 2가지이다. 첫 번째는 日韓 FTA는 日韓經濟 긴밀화를 추진하는 틀을 형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日韓 양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시아태평양국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이다. FTA는 양국의 자유화 노력을 촉진시키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역자유화 및 다자간 통상 시스템하에서의 자유화를 위해 日韓 양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日韓 FTA는 GATT/WTO의 FTA 자격조건에도 整合的인 것으로 실시한다.

제 6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존재하는 관세·비관세조치의 철폐를 통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무역창출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제3국과의 무역을 축소하는 무역전환 효과는 무역창출 효과의 일부분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써, 이 또한 규모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경쟁촉진, 기업제휴에서 발생하는 동태적 효과는 정태적 효과를 훨씬 상회하는 창출효과를 가져오고, 제3국에도 파급되어 경제활성화를 유발한다.

日韓 양국은 모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의 指導的인 회원국이다. APEC은 1994년 보골선언(Bogor Declaration)에서, 2010년~2020년까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표명하고, 오사카(大阪) 행동지침에 의거하여 무역투자의 자유화·원활화와 경제기술협력이라

는 兩 구도체제의 APEC 프로그램을 실시 중에 있다. 日韓 FTA는 日韓 양국이 자유화·원활화를 미리 앞당겨 실시하는 형태가 되므로, APEC이 추진하는 목표 달성을 주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초월하여 다자간 통상 시스템하에서의 자유화 달성에도 공헌할 것이다.

(山澤 逸平)

日韓 經濟 Agenda 21

— 21세기를 향한 日韓 경제관계 긴밀화를 위하여 —

1999년 3월

양국은 日韓 양국간의 무역·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보다 더 활발하게 하여 경제관계의 긴밀화를 도모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日韓經濟 파트너쉽을 더욱 확고한 것으로 하는 것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각종 규제의 존재,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각종 제도 등의 차이 등이 日韓間의 경제활동에 障害요인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장해를 가능한 제거해 가는 것에 대한 공통 인식을 가진다. 그 일환으로써, 다음과 같은 중점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한다.

1. 투자촉진

양국은 日韓 투자협정 교섭을 신속히 추진하여, 가능한 조기 체결을 목표로 한다. 양국은 同 협정을 투자촉진 효과가 높은 것으로 한다는 기본적 방침하에서 교섭에 임한다.

양국은 금년 가을에 제2회 日韓 민관합동 투자촉진협의회를 일본에서 개최하고, 민관이 일체가 되어 투자촉진을 위한 협의를 더욱 강화한다. 일본은 일본기업이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한 투자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적극적인 추진자세를 평가하며, 양국은 지속적으로 투자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를 전개한다.

2. 조세조약

양국은 지난해 10월에 서명한 새로운 日韓 조세조약의 조기 발효를 통해, 양국간의 자본 및 인적자원 등의 교류를 더욱 촉진시킨다.

3. 기준·인증분야의 협력

(1) 상호승인분야 협력

양국은 국민의 안전, 사회의 질서유지 등을 확보하면서, 양국간의 제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상호간의 제도를 존중하면서 상대국에서 행한 적합성평가 절차에 대한 결과 등을 서로 유입하는 것이 유익할 경우가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보교환·논의를 시작한다.

(2) 표준분야 협력

양국은 국내규격의 國際整合化, 국제규격개발 등 표준화에 관한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표준인증분야에 관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표준분야 협력을 위한 정보교환·논의를 시작한다.

4. 지적소유권분야 협력

양국은 심사기준 등의 운용의 조화, 모방품대책의 협조, WTO, WIPO 등의 구체적인 규범 책정을 향한 협력 등 지적소유권분야에서의 공통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으로 지적소유권의 가일층의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 협력, 심사관교류 프로그램,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한다.

5. WTO 차기교섭을 위한 협력

양국은 WTO 차기교섭과 관련하여 농업·서비스 등의 「이미 합의된 과제」와 함께, 광공업품 관세 및 투자규범의 책정도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교섭이라는 것을 지지한다는데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WTO 차기교섭의 성공을 향한 구체적인 협조를 협의하기 위해 5, 6월을 전후하여 정부당국간 협의를 추진한다.